

북 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관의 장



제1165호 2023. 8. 30. (수)

공 고

- 제2023-991호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---2
- 제2023-994호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청소년안전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---6
- 제2023-996호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---10
- 제2023-1003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---16

공										
람										

발행 : 부산광역시 북구

편집 : 미래전략실 (☎309-5411)

공 고

○부산광역시북구공고제2023-991호

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8월 30일

부산광역시 북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정부 제4차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부산시 다자녀가정 우대정책 방향에 부합할 필요성(3→2자녀 이상)

2. 주요내용

- ‘다자녀가정’지원 적용기준 확대(3명 이상 → 2명 이상)

- “다자녀가정”이란 부산광역시 북구(이하“구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(다만,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)을 말한다.

- 현행 조례 미비점 등 정비

- 기존 조례 제2조(책무)를 제2조의 2로 변경하고, 제2조(정의)를 신설하여‘다자녀가정’및‘출산장려금’에 대한 용어 해설 명시

- 다른 조례의 개정

- 「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」 별표 5 감면대상 일부개정

: 「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」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 가정에 속하는 자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: 주민복지과장,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민복지과(전화: 051-309-4372, FAX: 051-309-4369, E-mail: min0915711@korea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부산광역시 복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 복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제2조의2로 하고, 같은 조(중전의 제2조) 제1항 중 “복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는”을 “복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구민”을 “부산광역시 북구민”으로 하고,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다자녀가정”이란 부산광역시 복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(다만,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)을 말한다.
2. “출산장려금”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부산광역시 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구청장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자녀가정(구에 거주하고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을 말한다)”을 “다자녀가정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「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가족 사랑카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부산광역시 복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5 중 “「부산광역시 복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」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(구에 거주하고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을 말한다)에 속하는 자”를 “「부산광역시 복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」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”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 <p>제2조(책무) ① 부산광역시 북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는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, 저출산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구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 략)</p> <p>제4조(출산장려금의 지원)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·③ (생 략)</p> <p>제5조(다자녀가정의 지원) ① 구청장은 다자녀가정(구에 거주하고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을 말한다)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1.·2. (생 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「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」 제8조에 따른 가족사랑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다자녀가정”이란 부산광역시 북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(다만,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)을 말한다.</p> <p>2. “출산장려금”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.</p> <p>제2조의2(책무) ① ----- 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-----.</p> <p>② 부산광역시 북구민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출산장려금의 지원) ① 구청장---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다자녀가정의 지원) ① ----- 다자녀가정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「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가족사랑카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.</p>

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(규칙) 명 :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성명(단체명) :
- 주 소 :
- 연 락 처 :

개정안 내용	의 견	비 고

○부산광역시북구공고제2023-994호

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청소년안전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청소년안전망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3년 8월 30일

부산광역시 북구청장

1. 개정이유

청소년들의 건전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해 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역 의견 수렴과 대외적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홍보활동 등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명예센터장 활동지원비를 예산편성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□ 「명예센터장」 신설 (조례안 제8조의 2)

○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청소년안전망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(조직 및 구성)의 하위부분 제8조의 2(명예센터장) 신설

제8조의2(명예센터장) ①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운영(업무)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자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명예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1.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안전망 구축지원
2. 고위기 청소년, 학교 밖 청소년 발견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
3. 상담복지센터 대외 홍보 활동 등

② 명예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명예센터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2.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위에서 계속 근무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④ 명예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,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: 아동청소년과장,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동청소년과(전화: 051-309-5131, FAX: 051-309-5119, E-mail:jiyoung79@korea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부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

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청소년안전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청소년안전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8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명예센터장) ①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운영(업무)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자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명예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1.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안전망 구축지원

2. 고위기 청소년, 학교 밖 청소년 발견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

3. 상담복지센터 대외 홍보 활동 등

② 명예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명예센터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2.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위에서 계속 근무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④ 명예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,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제8조의2(명예센터장) ① 구청장은 <u>상담복지센터 운영(업무)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자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명예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안전망 구축지원</u> 2. <u>고위기 청소년, 학교 밖 청소년 발견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</u> 3. <u>상담복지센터 대외 홍보활동 등</u> <p>② <u>명예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구청장은 명예센터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</u> 2. <u>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위에서 계속 근무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</u> <p>④ <u>명예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,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

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(규칙)명 :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청소년안전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- 성명(단체명) :
- 주 소 :
- 연 락 처 :

개정안 내용	의 건	비 고

○부산광역시북구공고제2023-996호

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8월 30일
부산광역시 북구청장

1. 개정 이유

-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기한 연장
 - 존속기한 연장(2023. 12. 31. → 2028. 12. 31.까지)
- 노인복지기금 운용 개선 권고사항(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50%이상) 반영
 - 위원수 7명(당연직 4명, 민간위원 3명) → 8명(당연직 4명, 민간위원 4명)

2. 주요내용

- 제4조의3(기금의 존속기한) : 일부개정
 -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5년 기한 연장(2028. 12. 31.까지)
- 제4조의4(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) : 일부개정
 - 위원회 구성 인원 증가(7명 → 8명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: 주민복지과장,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민복지과(전화: 051-309-4364, FAX: 051-309-4369, E-mail: jjh0919@korea.kr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부산광역시 복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 복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3 중 “2023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4조의4제2항 중 “7명”을 “8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4조의3(기금의 존속기한)	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은 <u>2023년 12월 31일</u> 까지로 한다.	제4조의3(기금의 존속기한)	----- ----- -----	<u>2028년 12월 31일</u> ----- ----- -----.
제4조의4(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(생략)	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<u>7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제4조의4(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)	① (현행과 같음)	② ----- ----- <u>8명</u> -----.
③ ~ ⑤ (생략)		③ ~ ⑤ (현행과 같음)		

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1조(목적)

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 및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5.8.1, 2014.10.13, 2018.10.31., 2020.4.15.>

제2조(기금의 설치)

부산광역시 북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·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 <개정 99.2.25, 2014.10.31>

제3조

삭제 <2019.7.1.>

제4조(기금의 조성)

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<개정 2019.7.1>

1. 부산광역시 북구(이하 "북구"라 한다)의 출연금 <개정 2014.10.13>
2. 삭제 <99.2.25.>
3. 삭제 <99.2.25.>
4.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, 그 밖의 수익금 <개정 2018.10.31>

② 삭제 <2019.7.1.>

제4조의2 삭제 <2019.7.1.>

제4조의3(기금의 존속기한)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<개정 2018.10.31>

[본조신설 2014.10.31.]

제4조의4(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)

①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복지교육국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당연직 위원: 기획감사실장, 주민복지과장
2. 위촉직 위원: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.

[본조신설 2019.7.1.]

제4조의5(회의)

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[본조신설 2019.7.1.]

제5조

삭제 <2005.8.1.>

제6조

삭제 <2005.8.1.>

제7조

삭제 <2005.8.1.>

제8조(기금의 관리)

-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·운동하되, 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·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. <개정 2019.7.1>
-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·관리하여야 한다.
- ③ 삭제 <2019.7.1.>

[전문개정 99.2.25.]

제9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

-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하며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<개정 99.2.25, 2000.9.30, 2005.8.1, 2019.7.1>
- ② 삭제 <2019.7.1.>
-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,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99.2.25, 개정 2000.9.30, 2019.7.1>

제10조(기금의 용도)

-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 <개정 2018.10.31, 2019.7.1>
 - 1.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 북구지회 및 경로당 운영지원
 - 2. 노인복지관 관리운영 지원
 - 3. 노인취업상담 및 알선, 공동작업장 운영지도
 - 4. 노인교실 운영, 상담소 운영 지원
 - 5. 노인단체의 봉사활동 참여와 지원
 - 6.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<개정 2018.10.31>
- ② 삭제 <99.2.25.>

[제목개정 2019.7.1.]

제11조(기금관리공무원)

-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·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두어야 한다. <개정 99.2.25, 2000.9.30, 2003.9.27>
 - 1. 기금운용관 : 주민복지과장 <개정 2006.12.8, 2013.11.1, 2019.7.1>
 - 2. 삭제 <2013.11.1.>
 - 3. 기금출납원 :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
- ② 삭제 <2019.7.1.>

제12조

삭제 <99.2.25.>

제13조

삭제 <99.2.25.>

제14조(관계규정의 준용)

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.

<개정 2018.10.31>

제15조(시행규칙)

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(규칙) 명 :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성명(단체명) :
- 주 소 :
- 연 락 처 :

개정안 내용	의 견	비 고

공 고

○부산광역시복구공고제2023-1003호

부산광역시 복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부산광역시 복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부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8월 30일

부산광역시 복구청장

1. 개정이유

주차장 조성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복구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「지방재정법」에 의거 연장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 : 2023년 12월 31일 ⇨ 2028년 12월 31일

3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복구청장(교통행정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나.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
※ 의견제출 및 문의처

○ 주 소 : 부산광역시 복구 낙동대로1570번길 33, 복구청(교통행정과)

○ 연락처 : 전화 051-309-4574, FAX 051-309-4506

○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방문 등

부산광역시 복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 복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중 “2023년 12월 31일”를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특별회계의 존속기한)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	제9조(특별회계의 존속기한) ----- ----- 2028년 12월 31일-----.

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(규칙)명 :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성명(단체명) :
- 주 소 :
- 연 락 처 :

개정안 내용	의 견	비 고